

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노인종합복지관

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5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시행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 이용료 및 사용료 납부기준, 시설사용허가 및 취소 기준을 조례로 변경하고 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규칙에 있는 이용료 및 사용료 납부기준, 시설사용 허가 및 취소기준을 조례로 변경(안 제9조, 제9조의3, 제9조의4)
- 나. 이용료 징수기준 명시(안 제8조)
- 다. 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법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수정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제136조, 제139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됨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0호 중 “시장”을 “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”을 “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우선순위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빠른 자”를 “빠른 사람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호 중 “운영유지”를 “운영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감면 또는 면제”를 “면제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서 교부시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
2.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경로자 등을 위한 행사

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사용료의 반환)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시설의 관리·운영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2. 시설 사용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용료 전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.
2. 제1항제2호의 경우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.

제9조의3(시설의 사용허가 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

1.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2.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
3. 기타 시설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

제9조의4(시설의 사용허가 취소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
2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
3.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시설)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. 1. ~ 9. (생략) 10. 기타 <u>시장이</u>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	제3조(시설) ----- -----. 1. ~ 9. (현행과 같음) 10.----- <u>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</u> --
제5조(운영시간) ① (생략) ② 복지관의 휴관일은 <u>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</u> 을 준용한다.	제5조(운영시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「 <u>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</u> 」-----.
제6조(시설의 이용) ① (생략) ② 복지관 시설규모에 비하여 이용자가 많은 경우 다음 각 호의 <u>규정에 의하여</u> 이용순서를 제한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이용신청 순서가 <u>빠른 자</u>	제6조(시설의 이용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 <u>우선순위에 따라</u>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----- <u>빠른 사람</u>
제7조(이용의 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저해 등 복지관 <u>운영유지</u> 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	제7조(이용의 제한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----- ----- <u>운영</u> ----- -----

람

3. (생 략)

제8조(이용료)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시설에 대하여 무료 또는 실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 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.

②시장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
③ (생 략)

제9조(시설의 사용 허가) ① (생 략)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. 다만,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3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이용료)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.

②-----

-----면제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시설의 사용 허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서 교부시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2.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경로자 등을 위한 행사

제9조의2(사용료의 반환)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

<신 설>

<신 설>

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시설의 관리·운영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
2. 시설 사용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용료 전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.

2. 제1항제2호의 경우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.

제9조의3(시설의 사용허가 제한)
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

1.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
2.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

3. 기타 시설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

제9조의4(시설의 사용허가 취소)

	<u>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</u> <u>1.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</u> <u>2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</u> <u>3.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</u>
--	--

관련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
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<단서 생략> <개정 2012.3.21.>

② ~ ③ 생략

소관 실·과·소		노인종합복지관
입 안 자	관 장	김 사 기
	담 당	박 동 명
	담 당 자	김 용 국 (480-4853)